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2585호
- 발의자 : 유용 의원 외 10명
- 발의일자 : 2021년 8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세종문화회관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세종문화회관의 결산 완료시점을 2월 말로 하고자 함(안 제15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당시 상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축소하여 개정되었음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9조(결산)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 또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결산완료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 위원회 유용 의원(동작4, 더불어민주당)이 발의하였으며, 법령에 따른 조례 변경으로 별다른

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 상기 법령의 개정일은 2019년 12월 3일로,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종합적인 운영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개정내용이 반영되기까지 1년여가 소요¹⁾되었으며,

서울특별시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.>

상기 조례가 개정될 당시 각각의 출자·출연 기관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면 입법경제성도 확보했을 것이므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공기업담당관을 포함한 집행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심형준	02-2180-8113

1) 해당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되어 개정 완료되었음.

**의안번호
2585**

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유용 의원	2021.8.11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개정안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완료 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세종문화회관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○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종문화회관의 결산완료 시점을 2월 말로 하고자 함(안 제15조) 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1.8. 11. 조례안 발의(유용 의원 대표발의) 		
부 서 검 토 의 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안가결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 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이사항 없음 		
대응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이사항 없음 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		
향후 계획			
담당부서	문화정책과	팀장	이희옥(☎2133-2526)
		담당	이혜숙(☎2133-2527)